

2026년도 『시장창출형 지능형 로봇 활용 및 확산 사업』 지원 기업 모집 연장 공고

부산지역 도심형 서비스로봇 발굴 및 실증을 통해 로봇 서비스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, 제조·서비스 산업과 로봇의 융합을 통한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모집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08일

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

I 사업개요

- ☐ 사업명 : 시장창출형 지능형 로봇 활용 및 확산 사업
- ☐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6. 11.
 - ※ 프로그램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
- ☐ 접수기간 : 2026. 4. 08(수) ~ 2026. 5. 22(금)
- ☐ 접수방법 :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홈페이지(www.kiro.re.kr)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
- ☐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부산소재 기업
- ☐ 지원규모 : 3개 분야, 총 13건 이내 지원 (총 340,000천원)
- ☐ 지원내용

구분	프로그램 명	프로그램 설명
1	서비스로봇 시제품 개발 지원	로봇융합 제품 고도화 및 신규 개발을 위한 서비스로봇 시제품 제작 지원 (첨부 1 참고)
2	도심형 로봇 서비스 비즈니스 실증 지원	도심형 서비스로봇 도입 및 실증 구축 지원 (첨부 2 참고)
3	시장창출형 로봇 융합 비즈니스 육성 지원	로봇융합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기획 및 컨설팅, 사업화 등 지원 (첨부 3 참고)

※ 신청하는 기업에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대상,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

※ 지원기업 프로그램 중복지원 불가

II

지원내용

- ☐ 지원대상 : 프로그램 유형별 상이(프로그램 상세 서류 확인 필요)
- ☐ 지원분야

구분	프로그램 명	지원 규모	평가방식
1	서비스로봇 시제품 개발 지원	7건 이내	발표평가
2	도심형 로봇 서비스 비즈니스 실증 지원	2건 이내	발표평가
3	시장창출형 로봇 융합 비즈니스 육성 지원 - (세부프로그램 1)로봇도입 기획지원 - (세부프로그램 2)서비스로봇 사업화 지원 - (세부프로그램 3)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지원	4건 이내	서면평가

※ 프로그램은 세부 공고문을 참조하여 지원

- ☐ 사업비 구성

구분	프로그램 명	금액	
		지원금	민간부담금(현금)
1	서비스로봇 시제품 개발 지원	20백만원 이내	2백만원 이상
2	도심형 로봇 서비스 비즈니스 실증 지원	단독 80백만원 이내	10백만원 이상
		컨소시엄 160백만원 이내	20백만원 이상
3	시장창출형 로봇 융합 비즈니스 육성 지원	10백만원 이내	-

※ 프로그램은 세부 공고문을 참조하여 지원

- ☐ 사업비 편성기준 : 프로그램 별 목적에 맞는 사업비 구성

구분	프로그램 명	사업비 사용 항목
1	서비스로봇 시제품 개발 지원	연구 재료비 ※ 마케팅 목적 제외
2	도심형 로봇 서비스 비즈니스 실증 지원	연구 재료비
		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
3	시장창출형 로봇 융합 비즈니스 육성 지원	연구 재료비 ※ 마케팅 목적 제외
		외부 전문기술 활용비
		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※ 세부프로그램 2 해당

- ☐ 사업비 사용 항목

구분	항목	내용
1	연구 재료비	시약 및 재료비, 전산처리비, 시제품 제작비, 시험 분석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
2	지식재산 창출 활동비	기술정보 수집, 기술정보 활동, 특허정보조사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
3	외부 전문기술 활용비	전문가 활용,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
Ⅲ

추진일정 및 평가절차

□ 추진일정

절 차	내 용	일 정	비 고
① 사업 공고	<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>	5. 08.~ 5. 22	한국로봇융합연구원 (KIRO) 홈페이지
↓			
② 신청 접수	< 사업신청 및 신청서류 제출 > • ~ 2026. 5. 22(금), 18시까지	5. 08.~ 5. 22	이메일 신청 신청기업→KIRO
↓			
③ 평가	<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> •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한 최종 지원과제 선정 • 서면평가, 발표평가 평가 대상은 신청접수후 통보 - 서면평가 : 온라인 제출서류를 토대로 평가 실시 - 발표평가 : 기업별 발표를 통한 평가 실시 • 심의를 통한 사업비 확정	6월 초	평가위원회
↓			
④ 최종 선정	<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안내 > •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• 수행기업 사업계획서 내용보완	6월 초	KIRO→선정기업
↓			
⑤ 협약 체결	< 협약체결 > • 과제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	6월 중	KIRO↔선정기업
↓			
⑥ 중간 점검	< 중간점검 > • 과제 진행상황 검토 및 향후 일정 공유	9월 말	KIRO→선정기업
↓			
⑦ 결과 평가	< 결과보고 및 결과평가 > • 최종 과제 수행 실적 결과 제출 • 지원 과제별 결과에 대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실시	협약 종료후	선정기업→KIRO
↓			
⑧ 사후 관리	< 사후관리 > • 선정기업별 성과관리(매출 및 고용 등)	상시	KIRO→선정기업

※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, 발표평가 대상자 및 일정은 추후 통보

□ 평가절차

○ 평가방법 : 서면·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

※ 프로그램 별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평가기준 확인 필요

※ 세부 일정 및 장소는 공고마감 후 별도 안내 예정

※ 과제 총괄책임자 직접발표를 원칙으로 함

※ 부득이한 경우, 평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무책임자 발표 가능

※ 이 외 발표자의 발표는 허용하지 않음

IV

제출서류

☐ 제출방법 :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

※ 전체파일을 취합 후 1개의 PDF파일로 제출(직인 날인 必)

※ 메일제목 : (기업명)_프로그램명

[예시 : (한국로봇융합연구원)_서비스로봇 시제품 개발 지원]

☐ **제출기한 : 2026. 5. 22(금), 18:00까지**

※ 제출서류 전체 제출분에 한하며, 서류 누락, 마감기한 후 제출 시 접수 불가

※ 접수기한 이후 제출 시 접수 불가 (접수처 이메일 수신시간 기준)

☐ 제출 및 문의처 :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김은영 선임 연구원

○ 연락처 : 051-623-1575 / 이메일 : key219@kiro.re.kr

☐ 제출서류 : No.1 ~ 8 공통사항 필수 서류, No.9 프로그램 확인

No.	제출서류	양식 제공	비 고
1	사업계획서 (※ 사업별 별도양식 활용)	○	공통사항 필수
2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○	
3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○	
4	규정준수 약약서	○	
5	사업자등록증	X	
6	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	X	
7	국세/지방세 납세 증명서	X	
8	중소/중견 기업 확인서	X	
9	최근 3개년(2023~2025) 재무제표 (※ 회계관련 직전년도(2025년) 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2025년 자료는 부가세 납입 증명서로 대체가능)	X	- 「서비스로봇 시제품 개발 지원」 필수
10	가점사항 관련 증빙서류	X	선택사항 (미제출시 가점반영 없음)

※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必(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,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)

※ 가점사항 관련 증빙서류 : 부산광역시 『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+』 선정 협약서

※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

※ 이메일 발송 후, 제출자료 유선확인 必

V

신청자격대상 및 제외대상

□ 신청자격 대상

- 프로그램마다 지원대상이 상이하여 신청대상이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조건 확인

□ 신청자격 제외대상

- 서식 제2호 ‘지원자격 제외 대상’에 해당하는 경우
- 자본잠식(완전) 상태 기업은 지원 불가
- 부도, 휴·폐업 기업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
-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,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
- 사업 공고일 현재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업체(수행기업 대표자, 총괄책임자 등)
-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-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동 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- 기타 공고 내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63411
2	무도유흥주점업	634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
-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
□ 선정제외

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-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, 특성,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
-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
□ 유의사항

- 사업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증빙되지 않는 내용은 무효처리하며,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-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
- 과제 종료 후, 일정한 성과활용기간 내 사업성과에 대한 추적 조사 대상사업이므로 반드시 요청서류를 제출해야 함
 - 성과활용기간 : 사업종료 후 3년
 - 사업성과지표 : 매출증가액(백만원), 신규고용(명), 기업만족도(%)
(기업만족도 조사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진행)

VI 기타사항

- 응모자가 없거나 평가를 통해 적격기업(기관)이 없는 경우 재공고(연장)함
- 또한,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자(종합평점 70점 이상)에 한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하며,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 재(연장)공고 추진
-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
-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 연구 내용 중복, 신청자격 부적격 등에 한해 평가 제외 가능
-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중단 및 환수 조치를 내릴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 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
- 기업지원금 중, 부가세가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금으로 사용가능
 - ※ 부가세는 선정기업 부담 원칙
- 평가방법은 신청기업에게 별도 공지 예정